



해외 경쟁정책 동향

미국

FTC와 DOJ에 의한 과거 합병사안의 분석

수평합병에 대한 과거의 집행에 관하여 수집한 자료를 당국이 정식 공표하는 첫 시도이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가 각각 집행활동을 한 과거의 수평합병사안으로부터 얻게 된 자료의 재검토에 관한 양 당국의 공동대처방안이 금일 R. Hewitt Pate DOJ 독점금지국 국장으로부터 발표되었다. 동 대처의 목표는 산업계와 법조계에 대해 합병에 관한 결정을 보다 더 투명하게 하며, 또한 합병집행에 관한 양 당국의 노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2003년 12월 공표 예정인 동 자료는 과거 5년간에 각각의 당국이 집행활동을 한 합병사안을 분석하게 된다.

동 대처는 양 당국을 대표하여 워싱톤에서 열린 미국변호사협회(America Bar Association) 독점금지 섹션 연례추계포럼에서 Pate 국장의 연설중에 공표되었다.

「독점금지는 시장, 제도, 시장참가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평합병의 심사 초기단계에서 중요한 요소인 허핀달·허쉬만 지수(HHI)가 도입된 이래로 20년 이상이 지났다. 금일 Pate 독점금지국 국장으로부터 발표된 FTC/DOJ 공동자료의 공표와 워크샵은 반트러스트 관계자에게 반트러스트 당국의 법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과거의 실적에 의거하고 그 실적으로 부터 배우려는 우리의 노력과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앞으로의 워크샵에 반트러스트 관계자가 참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FTC Timothy J. Muris 위원장은 언급했다.

양 당국은 최초의 조사결과를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실무가,

경제학자 및 학식경험자가 패널리스트로 참가,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FTC/DOJ의 공동워크샵은 2004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FTC 경쟁국은 경쟁을 제한하는 상관행의 배제에 대비하고 있다. 경쟁국의 임무는 법률위반의 피의사안 심사를 행하고, 필요한 경우 정식 집행활동을 다루도록 위원회에 권고할 것이다.

2003. 11. 18. 미 FTC 발표문
일본 월간 「공정취인」 2003년 12월호 발췌

연방 법무부, 국제 카르텔에 대처 여 지속적인 조사

네덜란드계 회사인 JO Tankers B.V.사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Hendrikus van Westenbrugge가 고객분할, 입찰담합 및 가격고정 등의 국제카르텔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국 및 기타 국가로 수출입 되는 특수 액체의 해상운송을 위한 용

선계약과 관련하여 이러한 카르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방법무부는 발표했다.

Van Westenbrugge씨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후의 조사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이로써 네덜란드 국적 소유자인 Van Westenbrugge 씨는 3개월간의 구금생활과 7만 5천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죄인정과 징역형은 법원의 승인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이번 사건은 미국인들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국제카르텔에 참여하는 책임자급의 임원진을 기소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고 R. Hewitt Pate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기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van Westenbrugge씨는 적어도 2001년 1월 이전부터 parcel tanker 선적에 있어서 담합을 했으며, 2002년 11월까지는 이러한 담합에 계속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rcel tanker 선적이란 화학물질, 식용유, 산성물 및 기타 특수한 액체를 선박의 아랫부분에 칸을 막아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온도 및 기타 조건들은 운송하고자 하는 액체의 유형에 따라 정해진다. 용선계약은 출발에서 도착 까지의 일정량의 액체를 운송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며, 통상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선적이 허용되는 정기용선 계약의 형태로 체결된다.

Van Westenbrugge씨와 그 밖

의 공모자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미국 및 기타 국가로 수출입되는 물건의 고객 및 선적료와 관련하여 협의를 한 바 있으며, 다른 사업자의 고객이 공고한 입찰에 있어서는 이에 참가하지 않거나 고의로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였고, 상호간 가격정보를 교환하기도 하여 일정수준 이하로는 응찰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로써 국제 Parcel tanker 선적 시장에서 있어서 소비자들이 경쟁제한적이며, 높은 가격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연방법무부는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처리는 연방법무부가 Parcel tanker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2003년 6월에는 Stolt-Nielsen 그룹의 운송회사인 Tanker Trading의 전직 이사인 Richard B. Wingfield씨가 Parcel tanker 선적 담합혐의로 형사고발 된 바 있으며, 10월 22일에는 선적료 담합과 관련하여 4,2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2003. 12. 8. 연방법무부

고객분할을 한 회사와 그 대표에 대해 벌금 부과

뉴욕에서 리넨 공급을 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고객분할 담합에 참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연방법무부가 발표했다. 이 회사(White Plains Coat & Apron Co. Inc.)는 35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데에 동의했다.

White Plains사와 그 대표인 Bruce Botchman씨는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에 늦어도 1990년대 중반부터 2002년 9월까지 뉴욕시에서 리넨 공급을 하면서 고객을 분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기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담합은 이미 1980년대 후반이나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형벌 부과에는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남아있다. 한편 Botchman씨는 사건의 조사에 협력하기로 했다.

“소비자분할협정은 사업활동을 방해하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행위들을 적발하여 고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리넨 공급 회사들은 주로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및 테이블보, 낱킨, 조리 사복장이나 앞치마 등을 사용하는 출장연회업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리넨을 공급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White Plains사 및 다른 리넨 공급 회사들

은 각각 서로의 고객들에 대해서 경쟁을 하지 말 것과 고객이 공급업자 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 을 서로 알려주고, 다른 사업자의 고객이 행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의도적 으로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거나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탐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White Plains와 Botchman은 셔먼법 제1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독점금지국 뉴욕지방사무소가 FBI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했다.

2003. 12. 4. 연방법무부

EU

유럽위원회, 새로운 합병규칙에 대한 각료이사회의 합의 완영

금일 몬티 위원(경쟁정책 담당)은 경쟁력이사회가 기업집중의 관리에 관한 규칙(“합병규칙”)을 재평가하는 제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했다. 몬티 위원은 「새로운 합병규칙, 그리고 작년 이래의 개혁이 EU에 25개국 체제에 있어서 비유될 수 없는 기업결합 심사 시스템을 제공하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경쟁력각료이사회는 금일 개정 합병규칙에 전회일치로 정치적 합의를 부여했다. 동 합병규칙은 2004년 5월 1일(EU 확대의 날)에 발효하기로 되어있다.

이후 최종판에 있어서 각료이사회 의 정식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는 동 신규칙은 비록 예측가능성에는 영향 을 받지 않을지라도 심사의 기한에 어느 정도의 정보의 유연성을 주어 기업에 이익을 가져오는 “one-stop shop”的 개념을 강화하고, 동 규칙 중 실체기준이 모든 유형의 유해한 시나리오를 - 단독기업에 의한 지배 적지위인지, 유럽의 소비자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과정상태로부터 발생 하는 영향인지를 따지지 말 것 - 대상 으로 할 것을 명확화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유해경쟁이 현저한 장 해)이 소비자에게 유해한 것이 될 수 있는 모든 형식의 기업집중을 포함하고, 유럽위원회가 개입하는 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가기 준을 명확하게 규정짓는다면 상기의 실체기준의 명확화는 법적 안전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합병규칙은 1989년에 처음으로 채택되어 1990년 12월 21일에 발효했다. 기일을 정한 재평가 조항에 따라 2001년 12월 유럽위원회는 이전에 이미 높게 평가된 합병규칙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절차를 개시하고 1년후 광범위한 개혁패키지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합병규칙개정안 외에 의사결정과정의 합리화를 위한, 그 중에서도 경제분석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존중하기 위한 일련의 비임법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2002. 12. 11. IP/02/1856 참조).

이러한 개혁의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chief competition economist의 임용과 심사팀의 결론을 「신선한 눈」으로 精査할 패널의 설치 등이다.

그 이외의 다른 개혁은 채택의 최종 단계에 있다. 예를 들면, 심사실시를 위한 best practice, 수평적합병(직접 경쟁자간의 합병)의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그 밖의 가이드라인(기존 고시의 재평가 및 비수평적합병 가이드라인의 초안)은 2004년에 실시될 계획이다.

이사회가 승인한 개정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구속력 있는 합병계약을 신고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요건의 철폐. 이로써 합병을 한다는 진정한 의도를 나타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동 개정은 ICN에서 발전한 「권장해야 할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다.
- 유럽위원회가 자동적으로는 관할 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합병의 당사기업이 유럽위원회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고 3이상의 회원국에게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 “one-stop shop”的 이익을 구

할 수 있다고 했다.

- 유럽위원회의 심사권한 강화. 이 것은 EC조약 81조 및 82조의 새로운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작년에 이사회가 합의한 권한에 대체적으로 부합하게 되었다.
- 합병당사자가 문제해소조치안을 제출한 경우, 제2단계심사(상세심사) 기간을 3주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특히 복잡한 사안의 곤란한 국면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당사자가 요청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유럽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제2단계심사의 기간은 다시 4주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03. 11. 27. 유럽위원회 발표문
일본취언지 12월호 발췌

몬티 위원, 경쟁분석에 있어서 중국의 대화 개시

유럽위원회 마리오 몬티 위원은 중국의 새로운 경쟁법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당국과 함께 선언서에 서명하였다. 동 선언서는 유럽위원회 및 중국당국 간의 경쟁정책 대화의 개시를 보여준다. 중국이 이러한 대화에 적극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동 서명은 현대 경제에 있어서 경쟁정책의 역할에 관한 문제와 동 분야의 EU·중국 간의 협력을 어떻게 개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 방문중에 행해졌다.

몬티 위원은 11월 24일, Yu Guangzhou 중국 商務部副部長, Wang Zhongfu 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局長과 회담하였다. 회담에서 현대 경제에 있어서 경쟁정책의 역할과 경쟁정책분야의 EU·중국 간의 협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의논되었다. Wu Yi 副總理와의 회담은 11월 25일에 예정되어 있다.

몬티 위원과 Yu Guangzhou 商務部副部長은 행사에서 EU·중국의 경쟁에 대한 대화의 개시를 나타내는 선언서에 서명했다. 동 대화는 경쟁정책분야에 있어서 EU에 의한 중국에 대한 기술협력 및 capacity building 협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경쟁정책에 대한 쌍방의 계속적인 협의 메카니즘의 창설을 지향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대화에 적극 나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몬티 위원은 행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중국은 EU에 있어서 전략적 파트너이다. 이 때문에 우리들이 이 중요한 정책분야 - 균형 잡힌 글로벌화의 관리에 불가피한 분야 - 에 있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유럽위원회는 경쟁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 기꺼이 중국당국과 이 경험을 공유할 생각이다.」

중국정부는 기업결합에 관한 규칙안과 지배적기업에 의한 남용행위의

금지를 포함한 가격지배에 관한 규칙의 초안을 올 초에 채택하였다(주 : 외국투자자에 의한 국내기업의 M&A에 관한 잠정규정(2003년 4월 12일 시행), 가격독점행위의 금지에 관한 잠정규정(2003년 11월 1일 시행)).

몬티 위원의 중국방문에 앞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경쟁정책에 관한 EU·일본 간의 2개국간 협력협정의 7월 서명후 처음으로 일본 경쟁당국의 고위층과의 협의가 행해졌다.

2003. 11. 24. 유럽위원회 발표문
일본 월간 「공정취언」 2003년 12월호 발췌

EU위원회, Tchibo사의 기업결합 승인

EU위원회는 Tchibo AG사가 소비자 제조업체인 Beiersdorf AG사를 주식취득의 형태로 기업결합 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회사들은 모두 독일 회사들인데 주요 사업활동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상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Tchibo사는 가족 회사로서 주로 커피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커피의 제조·판매와 상점이나 커피숍을 통한 제품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Beiersdorf사는 Nivea, Hansaplast 및

Tesa 등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다양한 소비재들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특히 화장품, 의약품 및 건강용품 등이 알려져 있다.

이번 기업결합이 EU위원회에 신고됨에 따라 위원회는 기업결합규칙에 의거하여 조사를 하였다. Tchibo는 독일 보험회사인 Allianz사로부터 Beiersdorf의 주식을 20.1%를 매수함으로써 총 50.46%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어 Beiersdorf에 대한 지배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위원회는 이러한 주식취득을 승인한 것이다.

EU위원회는 조사 결과, Tchibo의 주요 사업부문과 Beiersdorf의 주요 사업부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Tchibo는 일부 마케팅 방식을 통해서만 Beiersdorf와 경쟁이 되는 제품을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관련시장 확정을 매우 좁게 하는 경우, 가령 1회용 뱀드나 방충망 시장과 같은 곳에서도 시장점유율이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결합기업이 Tchibo 제품 판매점에서 다른 경쟁사들의 제품 판매는 금지한 채 Beiersdorf의 제품 만을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음으로서 수직적인 경쟁제한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번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이 시장지배적지위를 형성하거나 강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허용했다.

2003. 12. 17. EU위원회

EU위원회, 기업결합지침 채택

EU위원회는 경쟁사업자들간의 기업결합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수평적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이 지침은 이미 EU 각료이사회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유럽연합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결합 규제를 포괄적으로 개혁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Mario Monti 경쟁위원은 이 지침과 관련하여, “경쟁사 간의 기업결합이 가져오는 경쟁제한적인 영향력의 평가에 있어서 위원회가 포괄적으로 분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어느 기업결합이 문제되는지 여부를 법률상 및 경영상 자세하고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유럽에 있어서의 기업결합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 지침은 어떠한 합병이나 주식취득이 당해 회사의 시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품질이 저하되거나 소비자들의 선택가능성을 감소시키는지를 명확하게 해준다.

이 지침은 기업결합 검토에 관한 실질적인 테스트와 관련하여 기업결합 규칙 제2조의 새로운 내용을 보충해 준다. 개정 기업결합규칙은 “특히 시장지배적지위를 형성 또는 강화함으로써 유효경쟁을 방해하는” 기업결합

에 대한 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은 하나의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의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함으로써 반경쟁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는지 또는 과정적인 시장상황에 기인하여 반경쟁적인 결과가 나왔는지와는 관계없이 경쟁제한적인 모든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새로운 지침은 기업결합이 시장에서 경쟁자가 사라지게 하거나 남아있는 사업자들간의 공동행위를 조장하여 반경쟁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기업결합규칙을 보충하고 있다. 이사회의 최후 승인을 앞두고 있는 개정 기업결합규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수평적 가이드라인도 이와 동시에 발효된다.

한편 새로운 지침은 위원회가 경쟁 상황 평가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과 어느 경우에 위원회가 개입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표도 제시하고 있다. 기업결합의 결과가 시장집중도가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수준은 시장점유율이나 HH지수에 의해 결정된다.

EU위원회는 또한 기업의 효율성 주장도 경쟁제한성 평가에 있어서 고려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 효율성 주장을 고려하는 경우, 기업결합 당사들은 당해 기업결합으로 효율성이 증대되며,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 소비자가 당해 시장에서 충분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경쟁사와 기업결합을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효과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사실 등을 경쟁제한성을 약화시킨다.

이 지침은 각료이사회에서 기업결합규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자마자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는 기업결합 평가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한 사건 몇 가지도 함께 공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기업결합 심사과정이나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성과 예측기능성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3. 12. 16. EU위원회

독일

연방카르텔청, 기업결합 분할 명령

연방카르텔청은 WAZ(Westdeutsche Allgemeine Zeitungsverlag GmbH & Co. Zeitschriften und Beteiligungs-KG)사와 OTZ(Ostthuringer Zeitung Verlag GmbH & Co. KG)사의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강제명령을 했다.

이에 따라 WAZ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OTZ의 지분 중에서 40%를 제

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만일 WAZ가 이러한 의무를 연방카르텔청이 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카르텔청은 WAZ의 주식을 매각할 수탁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정해진 기간 동안 수탁기관은 WAZ의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1995년 11월 초순경 WAZ는 출판사업을 영위하는 Rhein-Main GmbH & Co. KG 그룹이 지배하는 OTZ의 지분 40%를 취득했다. 그 결과 WAZ는 OTZ의 지분 100%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지분율의 상승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시장집중임에도 불구하고, WAZ는 이 주식취득을 연방카르텔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2000년 1월 12일 이러한 주식취득 현황을 알게 된 연방카르텔청은 WAZ가 OTZ의 주식 4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OTZ와 WAZ가 이들이 발행하는 일간지 “Ostthuringer Zeitung”과 “Thuringer Allgemeine”가 배포되는 지역의 지역일간지 및 광고시장에서 강력한 시장지배적지위를 형성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2001년 1월 31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이러한 금지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WAZ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지난 2001년 12월 11일 역시 패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WAZ는 기업결합을

해소할 만한 법률상 조치를 스스로 취하겠다고 연방카르텔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WAZ는 그 후 아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카르텔청은 이번 분할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연방카르텔청은 “카르텔청의 이번 금지명령은 거의 2년 동안 WAZ가 경쟁제한적인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카르텔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기업결합을 해소할 수 있는 강제적인 조치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취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2003. 12. 1. 연방카르텔청

연방카르텔청, 지역 공공운송 시장의 개방 측구

연방카르텔청은 독일 지방철도주식회사(이하 DB Regio)와 ustra 하노버 운송회사(이하 ustra)가 하노버 일대에서 그들의 운송사업을 합병하기 위해 합작 투자회사인 ustra intalliance AG(이하 intalliance)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 승인은 하노버 지역 일대에서 공공운송 서비스 제공 계약이 경쟁적인 절차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조건으로 인해 당해 시장은 점진적으로 개방될 것으로 연방카르텔청은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간 현

재 체결되어 있는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최소한 DB Regio가 제공하는 철도여객 운송서비스의 30%와 ustra가 제공하는 버스 운송서비스의 50%는 각각 2007년 1월 1일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럽 연합 차원의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늦어도 2013년 1월 1일까지는 하노버 당국은 모든 지역 운송회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ustra가 제공하는 모든 버스 운송서비스와 DB Regio가 제공하는 모든 철도여객 운송서비스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차원의 경쟁성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DB Regio는 하노버 당국과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서 하노버와 그 일대를 포함한 관련시장에서 모든 철도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계약은 2006년 말에 종료된다. 또한 이 회사는 이 일대 지역에서 시외버스를 보조하는 방법을 통해 육상 운송사업도 하고 있다. 한편 ustra는 이 지역 일대에서 선도적인 시내버스 운송회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간 이 지역에서의 사업활동의 중복을 고려하여 결합시장점유율을 산정하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방카르텔청장은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을 통해 하노버 지역 일대에서의 공공운송 시장에서 DB Regio와 ustra의 시장지배적지위는 강화될 것이다. 공공계약의 체결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시장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계약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가회사들과 하노버 당국이 이러한 조건을 따르게 되면, 이번 기업결합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노버 지역 공공운송 시장은 공공계약에 있어서 유효경쟁을 위해 개방되는 최초의 시장이 되는 것이다. 하노버 지역 공공운송 시장이 합의된 바 대로 개방되지 않는다면, 기업결합에 대한 이번 승인은 철회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역 공공운송 시장의 특징은 시장구조가 현재 지역별로 독점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이 분야에서 경쟁의 정도가 미약한 것은 원칙적으로 규제의 틀, 특히 여객운송법과 철도 기본법의 집행과 관련되어 있다. 공공운송 분야에서의 미약한 경쟁의 압력은 유럽 차원에서 경쟁절차를 통한 운송서비스의 검토를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 누구도 언제 이러한 정책적인 절차가 완성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더욱이 개방을 위한 첫 번째 입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일은 많은 운송회사들로 하여금 어떻게 잠재적 경쟁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여러 사건들에서 DB와 같은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운송업자들간의 협력행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개방화에 참여한 운송업자들

이 기업결합에 의해 그들의 시장지배적지위를 형성하거나 강화한다면, 당면한 개방화는 성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한편 효과적인 개방이 되려면 지역 공공운송업자들의 기업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방카르텔청장의 말에 따르면, 카르텔청의 이번 결정은 지역 공공운송 사업 분야에서의 특징적인 목적들간의 충돌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시내 운송회사인 ustra가 DB Regio와 협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부과된 조건들이 경쟁 제한을 막아 줄 것이고 지역 공공운송 사업에서 필요한 개방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고 그는 말했다.

2003. 12. 4. 연방카르텔청

일본

석유제품 소매업자에 대해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와카야마현 아리다군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석유제품 소매업자 2사(이하 2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 2사에 대해 동 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제6항(부당업가판매)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경고조치 했다.

유한회사인 하마구치 석유는 와카야마현 아리다군 유아사쵸에 소재하는 셀프 주유소에서 2003년 9월 19일부터 동년 11월 20일까지 휘발유를 판매하면서 비용을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리터당 80~84엔)으로 계속해서 공급함으로써, 주변지역에 있는 석유제품 소매업자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를 일으키게 한 혐의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주식회사 이시바시 석유 역시 와카야마현 아리다군 키비쵸에 소재하는 셀프 주유소에서 2003년 9월 20일부터 동년 11월 20일까지의 사 이에 휘발유를 부당하게 낮은 가격(리터당 81~84엔)으로 공급해 주변 지역의 석유제품 소매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를 일으키게 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사에 대해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2003. 12. 1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후지아트 그룹에 대해 배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동경에 소재한 주식회사 후지아트 그룹(이하 후지아트 그룹)에 대해 경품표시법 제4조(우량 오인)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배제명령을 했다.

후지아트 그룹은 2003년 5월 13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일반소비

자에게 지갑을 판매하면서, 일간지에 끼워서 배포하는 광고지에서 다음과 같은 오인가능성이 있는 표시를 하였다.

- 게재된 사진 및 체험담을 게재하면서, 해당 상품을 사용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사진으로 게재되고 있어 이러한 사람이 실제로 금전운이 좋아진 체험을 한 것과 같아 표시
 - 해당 상품을 사용한 거의 모든 사람이 실제로 금전운이 상승하는 효과를 실감했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는 것 같이 표시
 - 해당 상품에 대해 중국의 저명한 과학자가 실험을 한 것과 같은 표시를 행함
- 그러나 실제로는 게재된 체험담의 대부분이 후지아트 그룹에 의해 창작된 것이며, 이러한 체험담과 함께 게재된 사진은 후지아트 그룹이 의뢰한 모델의 사진이었고, 해당 상품을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 금전운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했던 적도 없었으며, 해당 상품에 대해 중국의 저명한 과학자가 실험을 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소비자에게 오인될만한 표시를 했었던 사실과 취지를 공시하는 동시에, 향후 일반소비자에게 실제의 것보다 현저하고 우량한 것으로 보이는 표시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2003. 12. 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동일본 전신전화 주식회사에 대해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본 전신전화 주식회사(이하 NTT동일본)에 독점금지법 제3조(사적독점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동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경고조치 했다. 이와 함께 독점금지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제15항(경쟁자에 대한 거래방해)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에 대해서도 경고조치 했다.

NTT동일본은 자사에서 판매하는 FTTH 서비스인 B후렛트 가운데, 2002년 6월부터 판매를 개시한 단독주택 주택전용인 뉴 패밀리 타입에 있어서 실제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분기방식에 의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접속요금 및 뉴 패밀리 타입의 이용요금(4,500엔)을 설정해 놓고, 동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광섬유 1심지를 소비자에게 사용시켜, 실질적으로 광섬유 1심의 접속요금(5,074엔)을 밀도는 이용요금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었다.

FTTH 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자의 국사로부터 소비자의 집까지 광섬유를 끌어들여 고속 대용량의 브로드밴드 통신이 가능해지도록 상호접속 회선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분기방식이란 광섬유 1심을 분기 장치를 이용해 분기시켜, 복수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광섬유 1심을 공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접속요금이란 NTT동일본이 보유하는 광섬유 설비 등에 다른 전기통신업자가 접속할 때에 NTT동일본에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에 의해 NTT동일본은 자사의 가입자 광섬유에 접속해 FTTH 서비스를 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단독주택전용 FTTH서비스에의 신규 참가를 저해하여, 동일본 지역에 있어서의 단독주택전용 FTTH 서비스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가입자 광섬유란 전기통신사업자의 국사로부터 소비자의 집까지를 연결해 주는 광섬유를 말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제명령을 내렸다.

- NTT동일본은 뉴 패밀리 타입에 있어서 분기방식에 의한 접속요금 및 이용요금을 설정해 놓고 동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광섬유 1심을 10이용자에게 사용시킴으로서 자사의 가입자 광섬유에 접속해 FTTH 서비스를 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단독주택주택전용 FTTH 서비스에의 신규 참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취소할 것.
- NTT동일본은 향후 뉴 패밀리 타입의 서비스 내용에 대해 일반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하는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설비 구성

에 근거해 적정한 표시를 할 것.

- NTT동일본은 이러한 행위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자사의 가입자 광섬유에 접속하여 FTTH 서비스를 실시하는 통신사업자 및 일반소비자에게 알릴 것.
- NTT동일본은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이러한 공정위의 권고를 응낙하는 경우 권고와 같은 취지의 심결을 내리며, 만일 응낙하지 않을 때는 심판수속을 개시하게 된다.

또한, NTT동일본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ADSL 등의 개통공사를 담당하면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계약자에게 NTT동일본의 B후렛트 등의 영업활동을 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그 계약자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도 인정되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NTT동일본이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2003. 12. 4. 공정거래위원회